

의안번호	2211575
의 퇴 인	문대림의원
회 답 일	2025.7.24.
추계번호	25E37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향선 또는 연근해어업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임금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내항선 또는 연근해어업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임금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22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561억원(연평균 3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선원의 임금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안 제12조제3호)	-224	-292	-353	-349	-343	-1,561	-31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제3호(비과세소득)	○ 선원의 임금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현행) 선원의 임금 중 비과세 되는 부분은 내항상선의 선원은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외항상선의 선원은 월 500만원 이내의 급여임 → (개정안) 내항선(국내항만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또는 연근해어업(「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에서 선원의 급여 중 월 400만원 이내의 급여 비과세	

Ⅲ. 비용추계의 전제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제3호(비과세소득)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 2026.4.1.이후 임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동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선원의 임금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 적용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동 비용추계는 2025년 중 통과되어 2026.4.1.이후 받는 임금부터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
 - 근로소득세는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 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의 수 등에 따라 당월 원천징수액이 정해짐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당해연도부터 바로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
- 「한국선원통계연보」의 업종별 인원수 및 임금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5년간 선원인원 및 임금을 전망
 - 동 통계연보에는 외항선, 내항선 등 취업선원에 대한 연도별 현황 제공
- 현행 소득세법상 선원이 받고 있는 비과세 한도를 업종별로 고려하여, 비과세한도액 증액분에 대해 세수효과 추계
 - 현재 내항상선 선원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월 20만원을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
-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상 총급여규모별 유효세율을 활용하여 추계
 - 향후 5년간 임금 전망치(형행 비과세 분 제외)에 각 소득구간별 유효세율

을 적용하여 1인당 세수감소효과를 구한 후, 이에 향후 5년간의 인원수 전망치를 곱하여 총 세수감소효과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추계방법

□ (현황) 2024년말 기준 동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내항선 및 연근해어선 취업선원은 각각 7,603명, 9,644명이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451만원, 443만원임

○ 원양어선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도 있으나, 이들은 비거주자¹⁾로 국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표 2] 직책별 선원 취업 현황

(단위: 명, %)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20-24)
	합계	33,565	32,510	31,867	30,587	28,731	-3.81
국적선	외 항 선	8,145	8,238	8,066	8,634	8,833	2.05
	내 항 선	7,915	7,414	7,435	7,518	7,603	-1.00
	원양어선	1,232	1,151	1,157	1,104	1,089	-3.04
	연근해어선	13,743	13,534	13,261	11,608	9,644	-8.47
해취선	해외취업상선	2,179	1,863	1,643	1,423	1,273	-12.57
	해외취업어선	351	310	305	300	289	-4.74

주: 1. 한국인 대상

2. 외항상선은 외항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선·어선, 내항상선은 내항선, 연근어해선

자료: 해양수산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2022

[표 3] 직책별 임금현황(월급여 기준)

(단위: 만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20-24)
	합계	493	497	518	556	624	6.07
국적선	외 항 선	614	627	691	737	815	7.34
	내 항 선	396	400	422	435	451	3.33
	원양어선	763	801	955	1,001	1,590	20.16
	연근해어선	413	416	393	432	443	1.81
해취선	해외취업상선	766	783	827	852	934	5.10
	해외취업어선	732	711	1,171	1,133	1,782	24.90

자료: 해양수산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2022

1)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세수효과) 내향선 또는 연근해어업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임금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의 세수효과는 각 직책별 취업선원 인원수에 각 취업선원의 평균 연간급여(현행 비과세분 제외) 및 유효세율을 곱하여 도출, 이에 따른 2024년 기준 세수효과는 △315억원

- 평균 연간급여에서 현행 비과세분을 제외한 급여 기준으로 세수효과 추정
 - － 현재 내향상선의 선원은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하고 있음에 따라 연간 급여에서 240만원을 제외하여 현행 과세대상 급여 추정
 - － 개정안의 경우 내향상선의 선원의 급여 중 월 4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에 따라, 연간급여에서 4,800만원을 제외하여 개정안에 따른 과세대상 평균 급여 추정
- 유효세율은 국세통계연보의 총급여 구간별 유효세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선원직책별 연간급여를 국세통계연보의 해당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세수감소효과 도출

[표 4] 선원의 임금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에 따른 1인당 세수효과, 2024년 기준

(단위: 만원, %)

	개정 전 (현행)				개정 후			세수효과		
	평균 연간급여	과세대상 평균 연간급여 (현행 비과세분 ¹⁾ 제외)	유효 세율	1인당 소득세	과세대상 평균 연간급여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분 ²⁾ 제외)	유효 세율 ³⁾	1인당 소득세	1인당 세수효과	인원수 (명)	총세수 효과 (억원)
	(A)	(B)	(C)	(D) =B×C	(E)	(F)	(G) =E×F	(H) =G-D	(I)	(J) =H×I
내 향 선	5,410	5,170	3.57	184	610	0.0001	0.0001	-184	7,603	-140
연근해어선	5,318	5,078	3.57	181	518	0.0001	0.0001	-181	9,644	-175
합계	-	-	-	-	-	-	-	-	17,247	-315

주: 1) 현행 비과세분: 월 20만원 이내 → 연 240만원 이내임에 따라, 평균 연간급여에서 240만원 차감하여 과세대상 평균 연간급여 추정

2)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분: 월 400만원 이내 → 연 4,800만원 이내임에 따라, 평균 연간급여에서 4,800만원 차감하여 과세대상 평균 연간급여 추정

3) 유효세율은 국세통계연보의 총급여(비과세 제외)규모별로 구한 총급여대비 결정세액을 활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향후 5년 전망) 향후 5년간 취업선원의 주요 직책별 인원수 및 연간 급여는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

- 각 직책별 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을 활용
- 증가한 연간급여에 해당하는 유효세율 활용

□ (세수효과) 내향선 또는 연근해어업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임금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향후 5년간 총 1,561억원(연평균 3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 2026.4.1.이후 임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근로소득세 비과세는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가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제

[표 5] 선원의 임금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의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224	-292	-353	-349	-343	-1,561	-312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내향선 또는 연근해어업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임금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22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561억원(연평균 3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 2026.4.1.이후 임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동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선원의 임금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 적용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동 비용추계는 2025년 중 통과되어 2026.4.1. 이후 받는 임금부터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선원의 임금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안 제12조제3호)	-224	-292	-353	-349	-343	-1,561	-31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